

	<h1>보도 자료</h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b>하나 된 열정</b> <b>하나 된 대한민국</b>
		2017년 12월 12일(화) 조간[온라인 12월 11일(월) 14:0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b>담당 부서</b>	개인정보협력팀 윤재석 팀장 (전화:061-820-1831, 전자우편: jsyun@kisa.or.kr) 송현준 주임 (전화:061-820-1839, 전자우편: songhj10@kisa.or.kr)	
<b>참고 자료</b>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없음 <input type="checkbox"/>	총 2매

## KISA,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가이드라인' 발간

- GDPR 배경부터 기업 적용에 필요한 세부 준비사항 설명 세미나 개최 -
- 기업 담당자 위한 GDPR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세미나'를 1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 2018년 5월 25일부터 모든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시행

KISA는 이 날 세미나에서 현재까지 발간된 유럽연합 제29조 작업반\*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GDPR 시행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GDPR 가이드라인의 발간 배경 및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GDPR 인식 제고 및 준비, ▲기업책임성 강화,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제29조 작업반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 근거하여 EU 28개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으로,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적정성 평가 관련 심의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

※ 1차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제29조 작업반의 가이드라인 : DPO임명, 선임감독 기구, 고위험 초래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영향평가, 프로파일링, 개인정보 이동권 (17.11 현재)

※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www.privacy.go.kr/interantionalCooperation.do)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특히 기업 책임성 강화 부분에서는 ▲설계단계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내재화(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Default)\*, ▲DPO\*임명,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개인정보 국외이전, ▲선임 감독기구\* 과 약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Default :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design) 단계에서부터 기술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구조로 구축을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 DPO(Data Protection Officer) :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정보처리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 내부 정책 수립과 시행 등 역할을 수행

※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신규 도입 및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평가 제도

※ 선임 감독기구 :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할 경우, 관련 처리 활동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감독기구

또한, 지난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기업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이 GDPR을 현장 적용할 때 궁금해 하는 ▲GDPR의 적용 범위, ▲GDPR의 주요 개념,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간 역할 및 관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에 대한 응답결과도 공유됐다.

우리 기업의 문의가 많은 'GDPR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GDPR의 적용 여부는 정보주체의 '국적' 이 아닌 '위치'가 기준"이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해서도 "자필 문서, 전자문서 서명, 스캔파일 저장 등, 구두 동의를 녹화·녹음, 문자 인증번호 회신 등"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입증 수단이 된다는 EU 집행위 측의 답변이 공개됐다.

한편, KISA는 우리 기업이 GDPR 적용에 따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 GDPR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어려움을 문의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gdpr@kisa.or.kr)을 운영할 계획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개인정보보호가 기업활동의 장애물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과 전략 마련, 현장 중심형 체질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협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별도 송부 예정(15:00)